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1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 세무 및 법률정보

-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Tax Tips: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출처: 금융감독원, 2020.12.30]

개요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0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국내/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정합성 및 정확성 제고를 기대하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 코로나19 장기화가 결산 및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세요.
-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 과거 회계오류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하세요.
- 금감원이 게시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주요내용

II.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선제적 대응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선제적 대응

◆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회사와 감사인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비대면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인 비대면 감사절차 필요성이 높아짐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의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참고

【유의사항】

(회사)결산 관련 애로사항 존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기말감사 이전에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할 필요

(감사인)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20.12월)를 참고하여 대체적 감사절차·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자산손상 검사 시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21.1 월초 보도 예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을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할 필요

◦ 특히, '20 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자산 손상과 관련하여 코로나 19 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이 존재

➔ 금융감독당국은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을 위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시 고려사항에 관한 감독지침을 발표할 예정('21.1 월초)

【유의사항】

(공통) 코로나19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시, 회계기준과 함께 감독당국이 공표할 감독지침을 참고할 필요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2.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제출대상)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미제출 시 공시)상장법인 등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해야 함

\* (상장법인)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공시시스템에 제출[증선위 업무위탁]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공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제출서류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시점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점검 결과)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상장법인)** '15년: 167사 → '16년: 49사 → '17년: 39사 → '18년: 49사**(비상장법인)** '15년: 계도 → '16년: 284사 → '17년: 107사 → '18년: 75사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음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구 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상 장	미제출	59	20	22	17
	지연제출	97	18	17	32
	부실기재	11	11	-	-
	위반회사 계	<b>167</b>	<b>49</b>	<b>39</b>	<b>49</b>
	총 회사 수	2,017	2,097	2,167	2,244
비 상 장	미제출	-	113	55	29
	지연제출	-	164	52	46
	부실기재	-	7	-	-
	위반회사 계	-	<b>284</b>	<b>107</b>	<b>75</b>
	총 회사 수	2,339	2,533	2,687	2,986

구 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상 장	감사인 지정	2 년	-	4	2	-
		1 년	3	19	9	12
	경고	56	26	27	21	
	주의	56	-	1	16	
	조치 없음	52	-	-	-	
	위반회사 계	<b>167</b>	<b>49</b>	<b>39</b>	<b>49</b>	
비 상 장	감사인 지정	2 년	-	-	-	1
		1 년	-	31	14	3
	경고	-	46	41	24	
	주의	-	70	52	47	
	조치 없음	-	137	-	-	
	위반회사 계	-	<b>284</b>	<b>107</b>	<b>75</b>	

**【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총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할 필요

-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함
  - ⇒ 감사보고서일까지 제출·공시하지 않는 경우 기본조치 가중 예정
-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도 금지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

**【주요 위반 예시】**

- ✓(기한 계산 착오)A사는 20XX년 3월 29일(목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바 법정기한(6주전)인 20XX년 2월 14일(수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에도,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5일(목요일)에 1일 지연 제출
- ✓(법규 인식 미비)금융회사인 B사는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C사는 별도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미제출
- ✓(백지·전기 재무제표 제출)D사는 결산이 지연되어 법정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한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전기와 동일한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고 자본변동표는 백지로 제출
- ✓(최종제출 여부 미확인)E사는 제출과정에서 파일을 임시저장하였으나, 최종제출한 것으로 오인하고 제출 확인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제출
- ✓(파일 업로드 미완료)F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19 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 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 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0 회계연도는 자산 5 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①(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②(감사의 의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검토절차)감사인인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감사절차)감사인인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해외사례)'04 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19 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6.3% 수준

◦ 재고실사 입회 및 해외 방문 등의 대면방식 감사절차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감사인은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유의사항】**

(회사)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경영진의 충분한 관심과 함께 주요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

(감사인)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한 충분하고 적격한 인력 확보 및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해 투입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 상장회사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 '20년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에 해당

□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핵심감사사항(KAM)】

□(의미) 회사의 주요 위험요인을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사 지배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토록 하고, 그 선정 이유, 왜곡표시 위험, 수행한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토록 함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이해도 및 감사보고서의 유용성 제고

□(선정 및 기재) 3단계에 걸쳐 진행

◦[1단계]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 중요하게 왜곡 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치의 불확실성, 당기 유의한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등

◦[2단계] 감사인의 유의적 주의가 필요한 사항 파악 및 KAM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①주요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②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을 기재

□(적용대상·시기)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점검 결과)40 개 회계법인이 발행한 1,243 개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상 KAM 기재실태를 점검한 결과

◦KAM 선정 개수 및 기재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자산 2 조원 미만 회사의 '19년 감사보고서에 KAM 을 처음 기재한 중소·중견 회계법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회사당 KAM 이 평균 1.18 개에 불과[유럽 142 개 상장회사 '16년 평균 KAM 은 3.8개(최대 9개)]

회사 특유의 개별적 상황을 기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준서 내용만 기재  
자산 2 조원 이상 상장회사(145 사)중 57.2%가 2년 연속 동일한 항목을 KAM 으로 선정



◦KAM 관련사항을 재무제표 공시사항(주석)에 언급하지 않거나 KAM 이 없음\*에도 해당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회사가 상당수 발견됨

\* KAM 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감사인은 KAM 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보고서 별도 단락에 해당 사실을 기술해야 함(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A59)

**【유의사항】**

(회사)회사(지배기구)는 KAM 선정 시부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

(감사인)감사인은 회사(지배기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회사의 업종·재무상태·특수상황 등 개별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KAM을 선정하고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AM 선정 시 고려된 회사 특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할 필요

**5.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0.6 월)한 '21 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20 년 감사보고서부터 모든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에 해당

□금감원은 '20.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1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①재고자산, ②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제외), ③국외매출, ④이연법인세

◦'20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공통)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올해부터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①(재고자산)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원가상승 등의 경우 저가법을 적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
- ②(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제외)) 무형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됨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지출액을 자산화하고, 손상평가 시에는 합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회수가능가액을 측정
- ③(국외매출)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거래보다 높아 거래 상대방 및 실재성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토록 매출액(총액 또는 순액)을 인식
- ④(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사용 결손금, 세액공제 활용 등을 위한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때에만 인식

회계오류 예방노력  
경주 및 과거 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6. 회계오류 예방노력 경주 및 과거 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회사는 주요 거래 및 신규 취급 거래 등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 조치를 감경하며,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크더라도 계도 조치(경고 이하)만 합니다.

□(회계오류 예방·수정절차)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조직')에 통보하고, 감사조직은 필요시 외부조사를 실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은 회계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사실, 수정사항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 및 감사주체,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 간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필요

□(자진정정 감경제도)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오류수정규모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 실시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 수준을 감경

□(회계오류 심사감리 실적)15년부터 '20.9월까지 회계오류 자진수정내역을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78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치(이중 '과실' 위반비중이 62.8%)

**【유의사항】**

(회사)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하여 관련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는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거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할 필요

(감사인)회사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되지 않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회사 감사조직에 통보해야 함

(공통)변경된 감사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당기감사인과 회사 경영진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계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

\* 전기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필요시 전·당기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조율절차\*를 거칠 수 있음

\*동 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경우에는,사업보고서에 ❶ 논의된 의견불합치 사실, ❷ 주요 협의내용, ❸ 관련 계정과목 및 조정금액 등을 기재 (21.1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예정)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 발생 예방**

**7.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 발생 예방**

◆회계인프라 취약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틀리기 쉬운 회계오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수행 결과,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회계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회사에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가 많았음

◦경조치(주의, 경고) 종결된 회계오류이므로 비록 외부에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회사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공시 함으로써 신뢰도가 저하되고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지적 사례\*를 추출하여 회계포탈(<http://acct.fss.or.kr>)에 게시

\*①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심사감리 결과 경조치 사례 31건,  
②회사들이 반복 위반하는 주식 공시의무사항 관련 사례 11건

**【유의사항】**

(공통)회계처리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사례를 참고하여 범하기 쉬운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개정 예정)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 기획재정부는 '20.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21.),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 3⑤)

현 행	개 정 안
<p>□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li> <li>○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일</li> <li>○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li> </ul>	<p>□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p>&lt;삭 제&gt;</p>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납세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총당·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 3④)

현 행	개 정 안
<p>□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li> <li>-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li> </ul> <p>&lt;추 가&gt;</p>	<p>□ 기산일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 :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li> </ul> <p>* 세법에서 정한 환급기한 예시</p> <p>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이후 15일이 지난 날</p>

	②원료용 주류에 대한 환급 : 납부 기한 이후 10 일이 지난 날 ③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 : 신청일 이후 30 일 이내
--	---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법상 환급기한에 일치시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국기령 §36)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통지서* 일반우편 송달 대상</p> <p>* 국세환급 결정 시 세무서장이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지급장소, 지급요구일 등을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송부</p> <p>○ 국세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p> <p>○ 국세환급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일반우편 송달 대상 축소</p> <p>- (좌 동)</p> <p>&lt;삭 제&gt;</p>

<개정이유> 불필요한 송달비용 절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법인령 §19,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b>광고선전비</b>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 접대비	<input type="checkbox"/>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기준금액 조정  - <b>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b>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소득령 §8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원 이하 ○ (그 외) 1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b>3만원 이하</b>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법인령 §24)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공정·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input type="checkbox"/> 개발비 요건 보완 ○ (좌 동)  ○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개정이유>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요건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지급이자 손금귀속시기 보완(법인령 §70)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단,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분 지급이자 계상 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손금 귀속시기 보완 ○ (좌 동)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단서 적용 배제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적용



8.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법인령 §88④ 및 §89)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 방법 (①→②→③)  ① 특수관계인 외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 (제외대상) 주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input type="checkbox"/>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 단, 장내거래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input type="checkbox"/> <b>상장주식 시가규정 합리화</b>  ① 상장주식 시가  - 상장주식을 대량매매 등으로 거래*하거나 장외거래한 경우 :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 부존재 시 직전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 적용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② (좌 등)  ③ (좌 등)  <input type="checkbox"/> 상장주식 적용요건 보완  ○ 상장주식 적용요건  - 단,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개정이유>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등 합리화

\* 상장주식을 불특정다수인 간 장내거래 시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령 §112)

< 법 개정내용(§5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 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주택 가액 상향 조정 ○ (좌 동) ○ (좌 동) ○ (좌 동) - ③ 4억 원 → 5억 원 이하 ○ (좌 동)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 ②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 (공제대상) - ① 5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② 5억 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法) - ③ 4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令)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개정이유> 주택 및 분양권 가액 상향 조정에 따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10.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부가령 §109①)

< 법 개정내용(§61)>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부터 4,8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개정) 4,800만 원 → 8,000만 원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  ○ 4,800만 원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 8,000만 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 조정	
구분	부가가치율	구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4. 건설업, 그 밖의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개정이유> 간이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상증령 §31 의 2)

< 법 개정내용(§41 의 2)>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1)·증여세2)를 모두 과세
  - \*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 2) (초과배당금액-소득세액)에 대한 증여세
  - 초과배당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액을 가계산한 후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증여세액을 정산(환급·차액납부)
  -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신고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실제소득세액 ①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 해당 세액 ② 초과배당금액이 종합과세된 경우 : 종합소득세액-해당 초과배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종합소득세액 * 구체적 세액 계산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구체적 과세방법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3.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세부규정(종부령 §5 의 2)

< 법 개정내용(§10 의 2)>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세부규정 신설 ① (납세의무자)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 -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 ② (세액공제 적용 기준)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③ (신청)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없이도 계속 적용

<개정이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신고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21 등)**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 법 개정내용(§24 신설)>

(적용대상) 모든 내국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제외 업종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 등**

< 법 개정내용(§24 신설)>

(공제대상 자산) ① 또는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무형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li> </ul> <p>*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현행 조특칙 별표1과 동일]</p> <p><input type="checkbox"/> 건물, 구축물, 운반구 등에 해당하나,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li> <li>○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li> </ul> <p>* (예시)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범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건설업</td> <td>공제대상 자산</td> </tr> <tr> <td>어업</td> <td>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td> </tr> <tr> <td>운수업</td> <td>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td> </tr> <tr> <td>도소매업, 물류산업</td> <td>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방송차, 창고시설 등</td> </tr> <tr> <td>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td> <td>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td> </tr> <tr> <td>전문·종합휴양업</td> <td>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td> </tr> </table>	건설업	공제대상 자산	어업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운수업	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방송차, 창고시설 등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전문·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건설업	공제대상 자산												
어업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운수업	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방송차, 창고시설 등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전문·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자산 범위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 법 개정내용(§24 신설)>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④)</p> <p>*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p> <p>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p> <p>*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p> <p>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p> <p>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p> <p>④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p> <p><input type="checkbox"/> 직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p>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 전부터 해당 과세연도의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p>○ 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p>

<개정이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특수관계 적용에 있어 제 3 자 소유지분 계산에 포함되는 제 3 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국조령 안 §2)**

< 법 개정내용(§12 ②)>

특수관계 적용함에 있어 제 3 자 소유지분 계산시 제 3 자의 특수관계인(시행령으로 위임)의 지분을 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포함되는 제3자의 특수관계인 범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직계비속*</p> <p>*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p>

<개정이유>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8.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규정 정비 (국조령 안 §10~§12)

현 행	개 정 안
<p>□ 정상가격 산출방법</p> <p>○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②재판매 가격방법, ③ 원가가산방법, ④ 거래순이익률방법, ⑤ 이익분할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거래의 실질 및 관행 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 방법 적용 가능</p> <p>- ①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예상위험·기대편익 등 기초 산출법</p> <p>▪ 기초산출법 적용시 금융회사·국세청 산출 수수료 적용한 경우 정상가격으로 간주</p> <p>- ②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 현재가치할인법</p> <p>○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간주정상이자율*</p> <p>*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에 1천분의 15를 더한 이자율</p>	<p>○ 기타 합리적 방법 적용범위 명확화</p> <p style="text-align: center;">○ (좌 동)</p> <p>- ③ 간주정상이자율※</p> <p>※ ①~⑤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화</p>

<개정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방식 명확화

19.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외국환거래 신고시 과태료 감경 (국조령 §103)

현 행	개 정 안															
<p>□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p> <p>*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신고의무 위반금액</td> <td style="width: 50%;">과태료</td> </tr> <tr> <td>20억 이하</td> <td>해당금액의 10%</td> </tr> <tr> <td>20억 ~ 50억</td> <td>2억 + 20억 초과 15%</td> </tr> <tr> <td>50억 초과</td> <td>6.5억 + 50억 초과 20%</td> </tr> </table> <p>○ (감경규정) 50% 이내 감경</p> <p>- 위반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p> <p style="text-align: center;">&lt;추 가&gt;</p>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	20억 ~ 50억	2억 + 20억 초과 15%	50억 초과	6.5억 + 50억 초과 20%	<p>□ 과태료 상한액 설정 및 과태료 감경사유 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신고의무 위반금액</td> <td style="width: 50%;">과태료</td> </tr> <tr> <td>20억 이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좌 동)</td> </tr> <tr> <td>20억 ~ 50억</td> </tr> <tr> <td>50억 초과</td> <td>6.5억 + 50억 초과 20% 또는 20억원 중 작은 금액</td> </tr> </table> <p>-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한 경우</p>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좌 동)	20억 ~ 50억	50억 초과	6.5억 + 50억 초과 20% 또는 20억원 중 작은 금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해당금액의 10%															
20억 ~ 50억	2억 + 20억 초과 15%															
50억 초과	6.5억 + 50억 초과 20%															
신고의무 위반금액	과태료															
20억 이하	(좌 동)															
20억 ~ 50억																
50억 초과	6.5억 + 50억 초과 20% 또는 20억원 중 작은 금액															

<개정이유> 납세자의 과태료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과태료 상한액 설정) 이 영 시행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과태료 감경) '21.1.1. 이후 신고대상 분부터 적용

최신 세무예규 · 판례

최신 세무예규  
판례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국제세원-2623, 2020.08.26)

(사실관계)

○ 한국 거주자인 신청인은 '19.3월 내국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월 베트남소재 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

○ 이후 신청인은 베트남에서 매월 지급받은 국외근로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베트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베트남에서 이뤄지지 않아 외국납부세액 미확정을 원인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베트남의 과세기간은 '19.8월~'20.7월이며 연말정산은 그 이후에 이뤄짐.

- 베트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세액이 확정되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 할 예정임.

(질의요지)

○ 외국정부와 과세기간이 상이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회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의 과세기간('19.8.1.~'20.7.31.)이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19.8.1.~'20.7.31.)의 국외원천소득 중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9.8.1.~'19.12.31.)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임.

- 내국법인이 해외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현지법인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10%(이하 “부가가치세”)를 해당 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915, 2020.11.16)

(사실관계)

○ A법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력발전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매월 제공받고 있음.

○ A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세금(PPN\*) USD 10,000를 추가하여 총 USD 110,000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 PPN(Pajak\_세금, Pertambahan\_부가, Nilai\_가치, 부가가치세):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로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가가치세(기본세율 10%)를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함.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수력발전 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와 함께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ppn,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주한 수력발전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용역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Tax Tips:**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FAQ**

Q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A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임**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x)
1주택 소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Q2.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A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됨

Q3.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A3. 2주택 소유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됨**

Q4.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되는지??

- A4.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됨**
- Q5.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 A5. 과세기간 종료일(12.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Q6. 부부 합산해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A6. '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음**
-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임대수입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 Q7.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 A7.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됨.**
-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 Q8.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 A8.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1년까지는 소형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업 무 소 개

<h2 style="text-align: center;">업 무 소 개</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